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016

제출연월일: 2024. 8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·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84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므로,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"을 "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"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1항 중 "부양의무자"를 각각 "가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3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한다.

제11조의5제1항 중 "부양의무자가"를 "가구원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양의무자"를 "가구워"으로 한다.

제70조 전단 중 "부양의무자가 없는"을 "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없는"으로 한다.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생계급여·의료급여"를 "생계급여·주거급여·의료급여 · 교육급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아 혂 개 정 제11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생 제11조의3(교육지원 신청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(부양의무가 있는 배 가구원(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 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-----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---제11조의4(조사·질문 등)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(제11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 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이 하 같다)와 그 <u>부양의무자</u>에 대 ----- 가구워---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 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

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<u>부</u>양의무자의 주거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<u>부양의무자가</u>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 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11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지국가보훈부장관은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 가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| <u>가</u> |
|---------------------|
| 구원 |
| |
| |
| |
| 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|
| |
| <u>가구원이</u> |
| |
| |
| |
| |
| |
| ④ (현행과 같음) |
| 제11조의5(금융정보등의 제공) ① |
| |
| |
| |
| |
| |
| <u>가구원이</u> |
| |
| |
| |
| |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「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 게 금융정보 · 신용정보 또는 보 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 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 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 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 금 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③ ~ ⑦ (생 략)

| ② |
|----------------|
| |
| <u>가구원</u>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· |
|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|

| 제70조(양로지원) 특수임무유공자 |
|--|
| 또는 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 |
| 으로서 65세 이상인 남성이나 60 |
| 세 이상인 여성(다만, 특수임무 |
| 부상자인 남성은 60세 이상, 여 |
| 성은 55세 이상) 중 <u>부양의무자</u> |
| <u>가 없는</u>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 |
|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 |
| 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|
|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|
|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임 |
| 무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 |
|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|
| 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|
| 함께 지원할 수 있다. |
| 300-30-30-30-30-30-30-30-30-30-30-30-30- |

| 제70조(양로지원) |
|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<u>부양의무자</u> |
| (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|
|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. 이 |
| 하 같다)가 없는 |
| |
| |
| |
| |
| |
| |
| 제80조의2(자료의 제공 요청 등) |
| ①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
| 생계급여 • 주거급여 • 의료급여 |
| • 교육급여 |
| |

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1. ~ 13. (생 략)

- ② ~ ④ (생 략)

| 1 | 10 | / 슀 케 킈 | 7]. Ó) | |
|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|

- 1. ~ 1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안 제11조의3 (교육지원 신청) | 종전에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|
| | |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・ |
| 1 | |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본인과 '생계 또는 주 |
| | | 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'의 소득・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|
| | |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. |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미첨부 근거 규정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안 제11조의3 |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|
| 1 | (교육지원 신청) | 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|

2. 상세 사유

- 교육지원을 위해 최근 5년간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한 대상자는 610명이고 생활수준조사 결과 비해당자는 178명이나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2명 으로, 전체 신청자의 0.3%에 불과해 추가 예산 소요는 미미함
- O 이에 따라, 법률 개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기존 탈락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지원받지 못한 2명에 대한 추계를 작성함
 - 향후 5년간 연평균 5백만원 추가 예산 소요

Ⅲ. 부대의견

- 최근 5년 생활수준조사 결과,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은 소수임
- O 다만, 동 제도는 신청주의이므로 완화된 조사기준이 시행되면 신청인원 및 수혜인원 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Ⅳ. 작성자

O 성명

| 주무관 | 사무관 | 과장 | 실장·국장 |
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김미정 | 김진숙 | 윤석진 | 최병완 |

O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김진숙 | 044-202-5658 | jinsk1204@korea.kr |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